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01호 2021. 4. 28.(수)

거창韓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제2634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4
제263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2636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제2637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4
제2638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제2639호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제2640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제2641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제2642호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제2643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제2644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제2645호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85

규 칙

제1309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9
제1310호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8
제1311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0
제1312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4
제1313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0

훈 령

제449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133
제450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35
제451호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 138

고 시

제2021-70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48
제2021-71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 실시계획인가 고시 ····· 149
제2021-72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 151
제2021-73호 도로명주소 고시 ····· 152

공 고

제2021-619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154
제2021-621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 159

제2021-6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160
제2021-632호 노동조합 관련 해직·징계공무원 결정 신청 공고 ····· 163
제2021-639호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 166
제2021-65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75, 76호선, 중로 3-6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열람공 고 ····· 170
제2021-66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 172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34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3.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의 사항
2.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사업소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위원회 수당: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나. 예산학교 운영: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다. 공로자 포상: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근거: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위원회 수당, 포상금 등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 해 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28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범위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형식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전 조문)

(현행) 예산편성 과정⇒ (변경)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정함(안 제6조)

1) 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2)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마. 법령 위임범위 및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대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8조~제18조)

1) 위원 수 확대: 15명⇒30명

2) 위촉 위원 연임

3) 위촉 위원 공개모집 절차 구체화

4)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안 제18조)

(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기능대행

(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거창읍은 한시적으로 지역회의 구성

(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의결

바. 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을 정함(안 제19조)

사.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을 정함(안 제21조)

1)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있는 자

2)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따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 제39조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10.~3.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3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7명”을 “7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3명”을 “764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7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53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8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64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78 ~~767~~	350 ~~346~~	14	157 ~~153~~	72 ~~69~~	85 ~~84~~	41	44 ~~42~~	172 ~~17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42 ~~732~~	344 ~~341~~	14	128 ~~124~~	43 ~~40~~	85 ~~84~~	40	44 ~~42~~	172 ~~171~~
	4급	4 ~~3~~	3		1 ~~0~~		1 ~~0~~			
	4~5급	1 ~~2~~			0 ~~1~~		0 ~~1~~		1	
	5급	38 ~~37~~	15	3	6 ~~5~~	4	2 ~~1~~	3		11
	6급 이하	699 ~~690~~	326 ~~323~~	11	121 ~~118~~	39 ~~36~~	82	37	43 ~~41~~	161 ~~16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5~~	3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증원 11명

나. 관련조문: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 비	513	513	513	513	513	2,565

3. 관련 의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1년 인건비: 513,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29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안 제10조)

나. 정원의 총수 증원 11명: 767명⇒778명(안 제25조)
집행기관의 정원: 증11명(753명⇒764명)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4급 정원: 증1명(3명⇒4명)

2) 일반직 4~5급 정원: 감1명(2명⇒1명)

3) 일반직 5급 정원: 증1명(37명⇒38명)

4)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9명

가) 현행: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나) 변경: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5) 연구직(연구사) 정원: 증1명

가) 현행: 5명(본청2, 직속기관2, 사업소1)

나) 변경: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513,000천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36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로 한다.

제8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각각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경비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발전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 및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 략) 4.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6. (생 략)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6.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 (생 략)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년네트워크 활동 경비 지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 연도 (2021년)	2차 연도 (2022년)	3차 연도 (2023년)	4차 연도 (2024년)	5차 연도 (2025년)	합계
군비	165	55	55	55	55	3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5백만원

나. 청년 역량강화 지원: 160백만원

1) 청년 언택트 마케팅 지원: 100백만원

2) 청년 동아리 지원: 10백만원

3)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지원: 50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 양 희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0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함(안 제명, 제6조·제9조)

나.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3조의2)

1) 기능: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다. 청년시설 위탁 근거 신설,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19조)

라.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청년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백만원 확보, 1억6천만원 추경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6조·제8조·제13조의2)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37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이름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

정보 사용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거창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주소정보산업 진흥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에 출입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거 창 군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 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 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2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안 제2조)

나.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광고 게재 시 비용부담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주소정보 생활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1조)

1) 위원회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바.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정함(안 제12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을 정함(안 제13조)

아. 업무의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14조)

자. 토지 등의 출입증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도로명주소법」제29조·제31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18백만원 확보(예산추가 요인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4.~3. 2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38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하고, “감면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감면률”을 “경감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군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

현 행	개 정 안
	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경률(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경감률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 \textbf{개월} \text{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3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경감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체납 군세에 대한 가산금 면제를 신설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경감 확대(안 제9조의2·별표)

1) 경감기한 연장: 2020. 12. 31. ⇒ 2021. 12. 31.

2) 경감률 확대: 9단계(10%~50%) ⇒ 14단계(10%~75%)

나. 소상공인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3)

1)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면제세목: 2020년 이후 부과한 군세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3) 면제제외: 3회 이상 군세 체납자

다.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 정비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 삭제 (안 제3조)

2) 일몰도래 감면 연장(안 제5조·제7조·제9조)

가) 대상: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나) 연장: 2021. 12. 31. ⇒ 2023.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입법예고(「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39호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2조·제3조·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담배소비세”를 삭제하고 제5조 조 제목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3장 주민세” 및 “제1절 균등분”을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7조 앞의 “제2절 재산분”을 삭제하고,
제7조 조 제목 중 “세율”을 “사업소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9조 조 제목 “(세율)”을 “(종업원분의 세율”)로 하고,
제10조 조 제목 “(신고의무)”를 “(종업원분의 신고의무)”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하고,
제11조 조 제목 “(세율)”을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5장 재산세”를 삭제하고
제14조 조 제목 “(납기)”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삭제하고
제15조 조 제목 “(세율)”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거창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장 담배소비세	<삭 제>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생 략)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생 략)
제3장 주민세	<삭 제>
제1절 균등분	<삭 제>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삭 제>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3절 종업원분	<삭 제>
제9조(세율) (생 략)	제9조(종업원분의 세율)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의무) ①~② (생 략)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1조(세율) ①~③ (생 략)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재산세	<삭 제>
제14조(납기) (생 략)	제14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현행과 같음)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삭 제>
제15조(세율) (생 략)	제1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현행과 같음)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4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 시행)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1) 균등분 ⇒ 개인분(안 제6조)

2) 재산분 ⇒ 사업소분(안 제7조)

나. 주민세 세율을 정함

1)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함(안 제6조)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함(안 제7조)

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8조)

1) 신고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물 신축·증축 등

2)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

라.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2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장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40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7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2조제2항)

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

2)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41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5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 제목 “(회의 및 수당)”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8조·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삭 제>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10조(협의)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	<삭 제>

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림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	<삭 제>

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유형	산정기준
1. 벌목, 나무줄기 자르기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과도한 가지훼손이란 나무줄기의 3분의 1 이상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무비용의 20퍼센트 + 실제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실제 작업비
4.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1) 군수의 승인 및 감독 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나. 군수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모든 경비)하여 산정

2) 나무 비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서식]

가로수사업(나무심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 종류		규격	**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	수량	**그루**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비용**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8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4조)

(현행)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변경)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나.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맞게 목적 변경함(안 제1조)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사항 등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19조)

1) 적용범위, 식재기준, 보고, 관리대장, 시행규칙

라.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조문 분리(안 제13조·제14조)

마.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생활림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생활숲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27.~3.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제5조제3항)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42호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4조 앞의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삭제하고,
제17조 조 제목 “(부과·징수)”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유량계”를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삭 제>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삭 제>
제4조(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삭 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삭 제>
제17조(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8조(산정방법)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8조(산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20조(가산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9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안 제3조의2)

1)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나. 법령 등 재기재사항 삭제

1) 정의, 위원 기능·수당, 가산금, 시행규칙(안 제2조·제4조·제10조·제20조·제22조)

다. 실효 규정인 지하수특별회계 삭제(안 제3장(제12조~제16조)

1) 근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2) 내용

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나) 개정당시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2018. 12. 31. 까지로 존속기한 만료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 변경(안 제19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5.~2.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43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과당월”을 “부과하는 그 달”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사용료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생 략)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그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가산금)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40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하수도법」 개정(2021. 1. 5. 시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위임 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위임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명시(안 제16조2)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여 정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제7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8.~2.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44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경기단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동호회”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
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대회 개최 및 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6.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략)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3. (생 략)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활동 2.~3. (현행과 같음)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9. (생 략) ③ (생 략)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

	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 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6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 6. 9. 시행)으로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 재기재 등 정비(안 제1조·제2조)

1) 목적: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함

2) 정의: 위임조례이므로 상위법령 정의규정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삭제

나.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신설함(안 제9조~제15조)

1) 구성

가) 위원장 군수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

나) 당연직 위원: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

다) 위촉직 위원: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과장,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49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18.~3.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645호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청소년(이하 “참여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 및 보상)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43

발의일자	2021. 3. 30.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신재화, 김향란, 박수자, 표주숙, 이홍희 의원

1. 제안 이유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의회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안 제4조)
라.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선정 및 활동지원(안 제5조·제6조)
마. 협력 및 우수 체험수기·제안 선정 등(안 제7조·제8조)
바.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보상(안 제9조)
사. 표창(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9. ~ 4.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09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중 제5호 보건소 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② (생 략)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6. (생 략)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6. (현행과 같음)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	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

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별표 1]

읍장·면장 직급(제6조 관련)

직 위	직 급
거창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5. 보건소

부서	분장사무
보건정책과	1.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4. 건강검진 등 신고 업무 5. 보건복지 및 의약품안전실시계획 수립·시행 6.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9. 비상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에 관한 업무 10.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11. 생물테러 대비·대응관리 12. 감염병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13.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관리 14. 각종 생활방역에 관한 업무 15.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 의료업소 등에 관한 사항 17.「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가·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8.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 19. 보건의료 재난대응 및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20. 공공의약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2. 모자보건 사업 23. 민원실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 24. 각종 건강검진 업무 25.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절주)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4.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5.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6.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7.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 위원회 운영 8.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 환경조성사업 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ICT활용 원격의료) 12.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 13. 정신의료기관 관리 14.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5.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17. 건강주치의제 운영 18.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1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 구강보건사업(학교 포함) 21.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예방관리사업 22.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2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24. 방문건강관리 사업 25.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6. 치매안심센터 운영 27.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8. 그 밖의 건강증진업무 등에 관한 사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15

제출연월일	2021. 3. 24.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 · 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급 신설 및 조정(안 제3조·제4조·별표 1)

1) 안전총괄과장

가) 현행: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나) 변경: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2) 보건소장

가) 현행: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간호사무관

나) 변경: 기술서기관

3) 보건정책과장: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간호사무관

4) 건강증진과장: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간호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5) 남상면장

가) 현행: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나) 변경: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나. 보건소 과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안 별표 2)

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증11명(안 별표 3)

1) 일반직 4급: 증1명(보건소: 기술서기관)

2) 일반직 4~5급: 감1명(보건소: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간호사무관)

3) 일반직 5급: 조정(보건소)

가) 감1명: 의무사무관

나) 증1명: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간호사무관

4) 일반직 5급: 증1명(보건소: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간호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5) 일반직 6급: 조정(면)

가) 감2: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나) 증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6) 일반직 7급: 증3명

가) 농업기술센터 7급(증2명): 행정 1, 행정·농업 1

나) 읍 7급(증1명): 행정·사회복지 1

7) 일반직 8급: 증3명

가) 본청 8급(증1명): 행정·녹지 1

나) 농업기술센터 8급(증1명): 행정·농업 1

다) 읍 8급(증1명): 행정·사회복지 1

8) 일반직 9급: 증3명

가) 본청 9급(증2명): 행정 1, 행정·시설 1

나) 면 9급(증1명): 행정·사회복지 1

9) 연구직(증1명): 학예연구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제27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1년 1회 추경예산 513,000천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10호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담배소비세”를 삭제하고, 제3조 조 제목 “(신고 및 납부처리)”를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로 하고 제4조 조 제목 “(보통징수)”를 “(담배소비세의 보통징수)”로 한다.

제5조 앞의 “제3장 주민세” 및 “제1절 균등분”을 삭제하고 제5조 조 제목 “(비과세 관리)”를 “(개인분의 비과세 관리)”로 같은 조 중 중 “주민세(균등분)”을 “주민세(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분의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앞의 “제2절 재산분”을 삭제한다.

제6조 조 제목 “(신고 및 납부 처리)”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고,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보통징수)”를 “(사업소분의 보통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하고, “법 제83조 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업소분의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경우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제8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8조 조 제목 중 “(신고 및 납부처리)”를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

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중 “(보통징수)”를 “(종업원분의 보통징수)”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하고,
제10조 조 제목 “(신고 및 납부처리)”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로 하며 제11조 조 제목 “(특별징수)”를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로 하고 제12조 조 제목 “(보통징수)”를 “(지방소득세의 보통징수)”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5장 재산세”를 삭제하고,
제13조 조 제목 “(과세대장 정리)”를 “(재산세의 과세대장 정리)”로 하며 제14조 조 제목 “(비과세 관리)”를 “(재산세의 비과세 관리)”로 하고 제15조 조 제목 “(물납 및 분납)”를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으로 하며 제16조 조 제목 “(납세관리인)”을 “(재산세의 납세관리인)”으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6장 자동차세” 및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삭제한다.

제17조 조 제목 “(분할납부)”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조 제목 “(연세액 일시납부)”를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로 한다.

제19조 조 제목 “(비과세 관리)”를 “(자동차세의 비과세 관리)”로 한다.

제20조 앞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삭제한다.

제20조 조 제목 “(신고 및 납부처리)”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다.

제21조 조 제목 “(보통징수)”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보통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동차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다.

제22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삭 제>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소비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삭 제> <삭 제>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분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개인분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삭 제>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사업소분의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경우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제3절 종업원분	<삭 제>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통징수) (생 략)	제9조(종업원분의 보통징수) (현행과 같음)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② (생 략)	제10조(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징수) (생 략)	제11조(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통징수) (생 략)	제12조(지방소득세의 보통징수) (현행과 같음)
제5장 재산세	<삭 제>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생 략)	제13조(재산세의 과세대장 정리) (현행과 같음)
제14조(비과세 관리) (생 략)	제14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현행과 같음)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② (생 략)	제15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납세관리인) (생 략)	제16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현행과 같음)
제6장 자동차세	<삭 제>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삭 제>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③ (생 략)	제18조(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①~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비과세 관리) (생 략)	제19조(자동차세의 비과세 관리) (현행과 같음)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삭 제>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일련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감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23

제출일자	2021. 3. 24.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 이유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 용어와 서식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1)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6조·제7조, 별지 제4호·제6호서식)

나. 개인분의 과세대장 정리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사업소분의 과세대장 정리를 신설함(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군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11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을 “계산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으로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정 가. 1개월간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을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으로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을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으로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산정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단서·제7항제3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으로 “따른다.”를 “따름”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등의 가산금이 가산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법 제73조에 따른 독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
2. 급수사용료와 따로 발급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급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을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제4항 중 “하수도 사용료 등”을 “사용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단서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의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액 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0조 조 제목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을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제4항 중 “환불”을 “환급”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불”을 “환급”으로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적용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으로 함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으로 함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으로 함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하수도법」 제22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1. 「하수도법」 제22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거창군 상수 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3.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함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른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름
제16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등의 가산금이 가산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법 제73조에 따른 독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 2. 급수사용료와 따로 발급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급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삭 제>
②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료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④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이의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18조(이의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액 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

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독 촉 장

종목	연도	월분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계	비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우 편 엽 서

우 표	

【별지 제14호서식】

독 촉 장

납 입 자	성 명	
	주 소	

체 납 액

종 목	부과내역	고 지 번 호	당 초 납기일	체 납 액		
				당초 원인자 부 담 금	가산금	계
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					처리기한 즉 시
수 신	거 창 군 수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급 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수 신	거 창 군 수				
연 도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급이자	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별지 제20호서식] <신 설>

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신청인	수용가 번호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성 명		업종		전화번호	

조정신청내용	연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이의내용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29

제출일자	2021. 3. 24.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 이유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면대상 임의규정을 삭제하여 감면혜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혼란을 방지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와 「지방세기본법」상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이자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부과 기준 신설함(안 제16조제1항)

1) 조례 제29조 위임

2)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2를 납부기한 경과일 1개월 기준으로 계산식 달리하여 가산금 부과기준 합리적 설정

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 개선함(안 제17조)

1)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구체화

2)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규정 삭제

3)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는 군부대 가산금 감면규정 삭제

다. 이의신청 서식을 신설함(안 제18조·별지 제20호서식)

라.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정함(안 제20조)

1) 준용: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이자' 지급기준

2)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고려하여 이자 가산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법령입안원칙에 따라 용어 순화, 체제정비 등(안 제5조·제8조·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8.~2.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12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5조 제1호·제2호·제3호를 제1항·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3호) 중 “배수관”을 “배수본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1을 준용한다.”를 “별표 1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5조(급수승인)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	**제5조(급수승인)** ①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2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

서를 납부한다.	서를 납부한다.
<신 설>	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 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신 설>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지 제15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수용가번호		
	연락처		생년 월일		
	주 소				
신청내용	고지내용	금월 부과 결정량(m^3)		고지금액(원)	
	분할신청 (m^3)	1차		2차		3차	

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30

제출일자	2021. 3. 24.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 이유

사용료 체납으로 수도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 해제 수수료를 폐지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할 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할 납부 규정 마련(안 제18조)

나. 체납으로 인한 정수 해제 수수료 폐지(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23조·제14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8.~2.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13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조 제목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을 “(사용료 부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산정시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다음 달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7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산정시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32

제출일자	2021. 4. 15.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 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그들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 확대(안 제7조제2항)

1) 지원금: 사용료 산정 시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50 지원

2) 지원기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동률 100분의 60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제11조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5.~4.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훈령 제449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1-16

제출연월일	2021. 3. 24.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 · 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소통과(증1명): 9급 행정·시설 1

나. 문화관광과(증1명): 학예연구사 1

다. 안전총괄과(증1명): 9급 행정 1

라. 환경과(증1명): 8급 행정·녹지 1

마. 농업기술센터(증3명)

1) 농업축산과(증2명): 7급 행정·농업 1, 8급 : 행정·농업 1

2) 행복농촌과(증1명): 7급 행정 1

바. 보건소(증1명): 4급 기술서기관 1

사. 거창읍(증2명): 7급 행정·사회복지 1, 8급 행정·사회복지 1

아. 가조면(증1명): 9급 행정·사회복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2021년 1회 추경예산 513,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훈령 제450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조 중 “하부행정기관”을 “읍·면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세부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1-17

제출연월일	2021. 3. 24.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보건소에 2개 과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9개 담당을 각 과에 맞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수행으로 군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세부분장사무 규정함(안 별표)

1) 보건정책과: 보건행정, 공공의약,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2)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건강지원, 치매안심, 보건민원, 정신건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2)「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1년 4월 28일

거창군 훈령 제451호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거창군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창군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무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준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제6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자)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고 영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관리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고 영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9조(안전보건교육) 군수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의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4.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있는 사람이 실시한다.

제11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4장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제12조(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 계획은 전 부서에 알리고, 사업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군수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

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제14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기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나 가스와 관계되는 작업은 감전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등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인증) 군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 군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 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의 작업중지 조치는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작업환경측정) ① 군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1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 안전보호구 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군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사업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군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5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알리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군수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관리감독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인
   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인
   라.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업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선출한다.

제29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영 제39조에 따라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7장 보칙

제32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33조(변경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의무화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거창군 고시 제2021 - 70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상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 3,570, 도 959, 군 3,071)
4.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일원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다목적광장 조성, 갈계숲 주변 경관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및 견학,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6. 1. ~ 2022. 12.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2)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71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남도립거창대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거 창 군 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6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

○ 명 칭 : 경남도립거창대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다.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면적 : 98,064㎡

○ 금회시행면적 : 5,000㎡

○ 사업내용 : 체육관 건립(건축면적 1,018.18㎡, 연면적 1,309.5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상남도(경남도립거창대학)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03.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계					54,086	5,000		
1	거창읍 김천리	164		학	54,086	5,000	경상남도	

사.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없음)

가.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7	학교시설	대학	거창읍 김천리 164번지 일원	98,064	-	-	경고115호 ('95.05.30)	

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규모(지하/지상)	비고
교육기본시설	1	제2공학관	1,132.97	3,330.73	1/3	
	2	제3공학관	697.68	1,897.2	0/3	
	3	제4공학관	647.2	1,215	0/2	
	4	제2실습동	108.8	108.8	0/1	
	5	본관동	1,417.34	5,512.09	1/4	
	6	제1공학관	1,711.86	7,190.1	1/4	
	7	제15동 건축실습실	88.4	88.4	0/1	
	8	제23동 자동차실습동	241.2	241.2	0/1	
	9	용접실습동	244.18	361.2	0/2	
	10	제26동 실습실및강의실	306.16	294.84	0/1	
	11	제1공학관(부1) (도자기가마실습실)	48	48	0/1	
	소 계		6,643.79	20,287.56		
지원시설	12	학생회관	443.15	942.71	0/3	
	13	창업보육센터	690.68	1,293.11	0/2	
	14	기숙사	909.84	3,762.93	1/4	
	15	수위실	33.21 -	33.21 -	0/1 -	금회 철거
	16	제16동 자재창고	85.36	85.36	0/1	
	17	국제어학센터	450.78	1,229.28	1/3	
	18	제27동 평생교육센터	1,137.44	2,985.41	0/2	
	19	기숙사(부2)	863.64	1,879.89	0/3	
	20	제23동 자동차실습동(부3)	137.4	137.4	0/1	
	21	국민체육센터	- 1,018.18	- 1,309.56	1/2	금회 증축
	소 계		4,751.5 5,736.47	12,349.3 13,625.65		
합계			11,395.29 12,380.26	32,636.86 33,913.21		

거창군 고시 제2021-72호

[○] 지정
도로 노선의 [ ] 변경 고시
[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폐지

2021년 4월 일

거 창 군 수

구 분		[○] 지정 [ ] 기존	[ ] 폐지 [ ] 변경
도로의 종류		군도	-
노선번호		37	-
노선명		양항-동례	-
기점		남하면 양항리 1121	-
종점		가조면 동례리 1725-1	-
주요 통과지		남하면 둔마리, 가조면,	-
총연장(킬로미터)		7.1	-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남하면 둔마리	-
	연장 (킬로미터)	0.2	-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거창군 고시 제2021 - 7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8.

거 창 군 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29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694-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29	20210428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57-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534-6	20210428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49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249-21	20210428	20091228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70	20210428	20090401	강남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40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74-180	20210428	2009040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아홉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6길 8-18	20210428	20090401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7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249-20	20210428	20090401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쳐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433, 14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촌2길 97-44	20210428	20090401	가지리 4개 마을중 가운데 자리한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1	20210428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619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 징수불능 체납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4. 예고기간 : 2021. 4. 21.(수) ~ 5. 11.(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라. 전화 055-940-303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sarangbi@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055)940-3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2019.4.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019.4.3.)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7. 1. 13 개정)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981. 6. 10 개정)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신설 2006. 9. 26. 2019.4.3.)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2000. 7. 19. 조례 제1568호 신설)(2006. 9. 26 개정 2019.4.3.)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006. 9. 26 신설)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2019.4.3.)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2019.4.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019.4.3.)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7. 1. 13 개정)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981. 6. 10 개정)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신설 2006. 9. 26. 2019.4.3.)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2000. 7. 19. 조례 제1568호 신설)(2006. 9. 26 개정 2019.4.3.) <삭 제>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2019.4.3.)

거창군 공고 제2021-621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거 창 군 수

1.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807호, 2019.12.10.) 제5조

2. 목　　적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4. 대　　상 : 2021. 4. 21. 기준, 거창군 관내 모든 필지의 지적·임야도(도해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제외)

5. 시행일자 : 2021. 4. 21.

6. 문　　의 : 경상남도 거창군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40-3323)

【 참　　고 】

◈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서 지적공부의 위치기준과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

- (지역측지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로,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음
- (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

거창군 공고 제2021-6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군유임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2. 공고기간 : 2021. 4. 21. ~ 2021. 5. 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1항, 제5조,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 치	철거대상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명령 대상자		공시송달 사유
	물건종류	수량	면적		이름	주소	
가북면 용산리 377	정미소	1	123.2	원상복구 및 철거	변*섭	경상남도 거창군	폐문부재 반송
	창고	1	44.7	원상복구 및 철거			
	축사	1	24	원상복구 및 철거	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취거절

6. 기타사항

가.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2021. 5. 6.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거창군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1-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변*수 귀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시설물·장애물 등)을 **2021년 5월 6일**까지 철거,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며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5월 6일**까지 반드시 철거,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1항·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면적㎡)	대집행 방법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377	정미소 창 고 축 사	1식(123.2㎡) 1식(44.7㎡) 1식(24㎡)	(포크레인 및 인력으로 철거 후 물품 및 집기 등이 있을 경우 우리군 소유창고 위천면 당산리 소재 당산농공단지내 임업기계창고보관)

2021.04.21.

거창군수

210㎜×297㎜[백상지 80g/㎡]

제2021-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변*섭 귀하
주소: 경남 거창군 가조면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시설물·장애물 등)을 **2021년 5월 6일**까지 철거,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며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5월 6일**까지 반드시 철거,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1항·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면적㎡)	대집행 방법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377	정미소 창 고 축 사	1식(123.2㎡) 1식(44.7㎡) 1식(24㎡)	(포크레인 및 인력으로 철거 후 물품 및 집기 등이 있을 경우 우리군 소유창고 위천면 당산리 소재 당산농공단지내 임업기계창고보관)

2021.04.21.

거창군수

210㎜×297㎜[백상지 80g/㎡]

거창군공고 제2021 - 632호

노동조합 관련 해직·징계공무원 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장

1. 신청기간 : 2021. 5. 1. ~ 2021. 7. 13.(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
   (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가. 접수처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나.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 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 - 639호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 501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명　　칭 :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

❍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 571m, B= 9.5 ~ 11.0m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055-940-8893)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는 열람기간 중에 열람 할 수 있습니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32,152	10,552			
1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135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2026-4	전	1,741	1,741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19-34	임	2,034	2,034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82-2	전	58	5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3	임	887	887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3,160	194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2063-3	전	2,000	2,000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20-11	임	1,362	1,362		거창군	
9	고제면 개명리	2073-4	전	433	338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73-6	전	121	64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357	134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20-13	임	534	534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393	19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14,344	305		국(농수산부)	
15	고제면 개명리	2046-9	전	72	72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61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238		거창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28,443	9,841			
1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050	1,050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947	352		국(건설부)	
3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7		국(건설부)	
4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2,681		국(건설부)	
5	고제면 개명리	산19-38	임	1,576	1,57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6	고제면 개명리	산19-39	임	73	73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7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131	13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8	고제면 개명리	2037-4	전	339	339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9	고제면 개명리	산19-36	임	2,985	2,985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512	30		국(건설부)	
11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1,531	153		국(건설부)	
12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1,487	341		국(건설부)	
13	고제면 개명리	2031-5	임	25	2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031-6	과	10	10		거창군	
15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29	7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7	10		국(국토해양부)	
17	고제면 개명리	2030-8	도	251	6		국(국토해양부)	
18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65		국(건설부)	

7.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산림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우편번호/주소 :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산림과

  ▸ FAX : 055-940-8893

  ▸ E-mail : gnldus03@korea.kr

의 견 서 (제출서식)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공고 제2021 - 65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75, 76호선, 중로 3-6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75, 76호선, 중로 3-6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시설:도로	군계획시설(소로 1-75호선)사업	거창	가지	소로	1	75	53	8.0~ 10.0	소로1-48 ~ 거창읍 가지리 1338-4	건고 제1967-382호 (1967.05.24)	실시계획인가일 ~ 2023.08.31
	군계획시설(소로 1-76호선)사업	거창	가지	소로	1	76	168	10.0	중로3-64 ~ 거창읍 가지리 1325-2	거창군 고시 제2020-122호 ('20.11.06.)	
	군계획시설(중로 3-64호선)사업	거창	가지	중로	3	64	86	12.0	거창읍 가지리 1333-6 ~ 거창읍 가지리 1336-11	거창군 고시 제2020-130호 ('20.11.26.)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무궁화신탁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포스코 P&S타워)

3. 열 람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4. 열 람 장 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21-66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121번지~가조면 동례리 1725-1 일원의 『舊88올림픽고속국도』 폐도 인계인수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거창군수 [인]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조면 농어촌도로102호선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가조	면도	평촌선	102호선	가조 동례 276	가조 동례 574-3	2.4km	-	14m	14m	구88올림픽 고속국도 인계인수

3. 위치도 및 지형도 : 따라붙임

❑ 위 치 도

지방도 구간
평촌마을
농어촌도로 구간 2.4km

❑ 지형도

304
313
사 병 리
신천
201
202
303
207
시천가
보더동
장기
장 기 리
기점 : 가조면 동례리 278
305
9
205
마 상 리
돈마
사양동
12
206
종점 : 가조면 동례리 574-3
101
대 초 리
도로 노선지정 신청구간
L=2.4km